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1년 6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7월 2일

3. 제안이유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근거 법령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령 및 조항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안 제3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5. 검토내용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2일 폐지되고,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근거 법령과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호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함.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근거 법령의 폐지에 따라 신설된 법령 및 조항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